

의안번호	제 273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2월 일 (제 305 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최 병 윤 의원의외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12 월 13일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최병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3
----------	-----

발의연월일 : 2011년 12월 13일
발 의 자 : 최병윤, 김영주, 김양희
박종성, 유완백, 정지숙
이광진

1. 제정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 3조)
- 지원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보고 (안 제4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안 제5조)
-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지방재정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함

다. 예산조치 : 해당부서 검토(별첨)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충청북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충청북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새마을장학금 지급

제6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8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부녀회장 또는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9조(선정) 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10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도 선발한다.

제11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나 시·군에 새마을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 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6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와 시·군은 소요예산액의 50퍼센트씩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관련법규 발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는 적립금을 들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지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